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옥규 의원 등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4년 4월 11일

○ 회부일자 : 2024년 4월 11일

3. 제안이유

- 청남대 운영에 관하여 휴관일, 행위제한, 주차료, 사무위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가족친화형 제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장료 면제 및 감면대상 확대
- 청남대 컨벤션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설치·운영 대상, 시설 명칭 및 사용료 등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청남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개관 및 관람시간(안 제3조제1항1호)
- 입장료(안 제4조제2항·제3항, 별표 1)
- 입장금지 및 행위제한(안 제5조제2항)
- 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안 제7조제1항)
- 사용료의 반환(안 제10조제1항)

- 시설 명칭 및 시설 사용료 변경, 신청서식 변경(안 별표 3, 별지 서식)
- 주차료 징수(안 제14조, 별표 2)
- 교육비 납부·감면 등(안 제15조제1항, 별표 4)
- 사무의 위탁(안 제16조)

5. 검토의견

- 청남대는 2003년 4월 소유권이 충청북도에 이관되면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의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휴관일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만 적용되던 입장료 면제 규정을 “7세 이하의 아동 및 보호자 1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제11호를 신설하여 충청북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안 제4조제3항 후단을 정비하여 입장료의 중복 할인의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할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음.
 - 안 제10조제1항의 개정을 통해 종전 조례 제10조제1항 각호에 의해

규정되던 사용료 반환 기준을 별표 2를 통해 과오납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청남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자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이후 시설 사용 시작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로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세분화하였음.

- 종전의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행되던 주차료 징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종전 별표 2 주차요금이 삭제, 안 제14조는 종전 조례 제15조로, 별표 2 주차요금은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으로 개정되었음.
 - 안 제14조는 종전의 조례 제15조에서, 안 제15조는 종전의 조례 제16조에서, 안 제16조는 종전의 조례 제17조에서, 안 제17조는 종전의 조례 제18조에서 각각 이동하였음.
- 본 조례안은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만 적용되던 입장료 면제 규정을 7세 이하의 아동 및 보호자 1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가족친화형 제도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도모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료 징수 규정을 폐지, 청남대 운영에 있어 휴관일, 행위제한, 입장료 및 사무위탁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남대 컨벤션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및 운영기준, 사용료 반환 규정 등을 정비하여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